

원격교육 운영규정

(제정 2020. 3. 1.)

(제명변경 2023. 2.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학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개설 및 관리, 온라인 공개장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2023.2.24.]

제2조(용어정의) ① 원격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 또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매체를 통해 중재되는 교수·학습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2.24.>

② 대면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개정 2020.10.1., 2022.8.31., 2023.2.24.>

③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개정 2022.8.31., 2023.2.24.>

④ 비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한 강의콘텐츠를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에 학습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개정 2022.8.31., 2023.2.24.>

1. 삭 제 <2022.8.31.>

2. 삭 제 <2022.8.31.>

3. 삭 제 <2022.8.31.>

⑤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⑥ 원격중심수업이란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1. 교내 원격수업이란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본교에서 개설하여 이루어지는 원격중심수업을 말한다.

2. 학점교류 원격수업이란 학점교류 협약 등을 통해 본교가 학점을 인정하는 타 대학 및 기관에서 개설하여 이루어지는 원격중심수업을 말한다.

3. xClass란 비실시간 원격수업에 대한 피드백 및 상호작용을 위해 수업의 일부가 대면수업 또는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중심수업을 말한다.

4. tClass는 마이크로러닝으로 구성된 5주, 1학점 단위의 원격중심수업을 말하며, 강의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운영한다.

5. AHA 기초소양 콘텐츠는 영역 및 주제에 대한 핵심내용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로 제작하여 비선형 방식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원격중심수업을 말한다. <신설 2024.3.1.>

⑦ 원격활용수업이란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일부가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1. 블렌디드러닝이란 대면수업에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원격활용수업을 말한다.

2. iClass란 대면수업을 사전 학습영상에 연계하여 활동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활용수업을 말한다. 다만, 사전 학습영상은 강의시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iClass+란 대면수업을 비실시간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활동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활용수업을 말한다.

⑧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MOOC”라 한다)란 학생 또는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온라인 강좌를 말하며,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3.2.24.>

1. K-MOOC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MOOC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3.2.24.>

2. JJ-MOOC는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MOOC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3.2.24.>

⑨ 강의콘텐츠란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영상 및 자료 등을 말한다.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모든 원격중심수업 및 원격활용수업, 본교에서 개발한 모든 MOOC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1., 2022.8.31., 2023.2.24.>

② 원격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 2021.8.20., 2022.8.31., 2023.2.24.>

제2장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4조(기능)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이러닝 분야 전문가 및 학생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위원 4명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규 학기 원격수업 교과목 선정 등 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기능을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본장신설 2023.2.24.]

제3장 원격수업 운영 <개정 2023.2.24.>

제9조(수업개설) ① 원격중심수업은 교양 교육과정 및 전공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에서 개설한다. <개정 2020.10.1., 2021.8.20., 2022.8.31.>

② 학점교류 원격수업은 원격중심수업에 한정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삭 제 <2022.8.31.>
2. 삭 제 <2022.8.31.>
3. 삭 제 <2022.8.31.>
4. 삭 제 <2022.8.31.>
5. 삭 제 <2022.8.31.>

③ 원격중심수업 및 원격활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을 통해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3.4.> <개정 2022.8.31., 2023.2.24.>

④ 원격수업의 개설 자격 및 강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3.4.> <개정 2022.8.31., 2023.2.24.>

1. 원격수업의 개설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기 강의평가 점수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로 소속 학장(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격활용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 원격중심수업의 개설 강좌수는 교원별로 매 학기 1강좌 이내로 한다. <신설 2022.8.31.>

3. 원격활용수업의 개설 강좌수는 교원별로 매 학기 2강좌 이내로 한다. <신설 2022.8.31.>

⑤ 위원회는 원격수업으로 기 개설하여 운영한 강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설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및 계절학기 운영 교과목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4., 2022.8.31., 2023.2.24.>

⑥ 개설이 확정된 원격수업은 학기 중에 수업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3.4., 2022.8.31.>

⑦ 원격수업의 분반 및 폐강 기준은 「수업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원격중심수업은 분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8.31.>

⑧ 총장은 원격수업을 개설하는 교원에게 강의콘텐츠의 개발, 업그레이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제9조의2(강의시수)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8.31.]

제10조(이수가능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이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원격중심수업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20., 2022.8.31., 2024.3.1.>

② 학점교류 원격수업의 수강자격은 직전학기 성적이 3.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조명변경 2021.3.4.]

제11조(출결관리) ① 원격수업의 출결은 주 단위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8.31.>

② 학생의 수강시점 및 학습 진도율에 따른 출결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8.31.>

1. 출석: 수업 기간 내 90% 이상 수강
2. 지각: 수업 기간 내 50% 이상 90% 미만 수강 또는 수업 기간 후 90% 이상 수강
3. 결석: 그 밖의 경우

[본조개정 2021.3.4.]

제12조(성적평가 및 이수기준) ① 원격수업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생평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4.>

② 원격수업의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성적평가는 대면 출석을 통한 지필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과제 및 프로젝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원격중심수업, 계절학기 및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4., 2021.8.20., 2022.8.31.>

③ 원격수업에서 출석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낙제(FA)로 한다. <개정 2021.3.4., 2022.8.31.>

④ AHA 기초소양 콘텐츠는 이수시간의 총합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며, 성적은 P/NP로 한다. <신설 2024.3.1.>

[조명변경 2021.3.4.]

제13조(운영평가) ① 센터장은 원격수업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사이버캠퍼스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강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 2022.8.31.>

② 위원회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강의콘텐츠를 평가하여 수정,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하여 원격수업으로의 개설 신청을 유보 또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3.4.>

1. 삭제 <2022.8.31.>
2. 강의영상의 질이 낮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원격수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좌 <개정 2021.3.4.>
3. 콘텐츠 점검 및 보완 등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강좌 <신설 2021.3.4.>
4.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강좌 <개정 2021.3.4.>
5. 「원격교육 운영지침」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좌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제14조(사이버캠퍼스 관리 및 정보보안) ① 사이버캠퍼스 시스템 및 개설 교과목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관리, 교과관리 및 비교과관리로 구분한다.

1. 시스템관리는 사이버캠퍼스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스마트러닝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시스템관리자는 「전주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교과관리자는 교무처, 수퍼스타칼리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사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의 부서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 접근할 때에는 해당교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2.8.31., 2023.2.24.>

3. 비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비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 2023.2.24.>

②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교과 및 비교과의 담당 교원은 해당 교과 및 비교과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조교 또는 청강생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3.4.> [본조신설 2020.5.21., 조명변경 2021.3.4.]

[본장변경 2023.2.24.]

제4장 MOOC

제15조(계획수립) MOOC 개발을 희망하는 부서는 개발 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 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강좌 선정 방법
2.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3.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4. 콘텐츠 질 관리 체계
5. 강좌 운영 계획
6. 강좌 활용 계획 등

제16조(MOOC 개설) MOOC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본교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타 대학 소속 교원 또는 강사와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제17조(MOOC 개발 및 운영) ① MOOC 개발 부서는 콘텐츠 개발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완료 전까지 교내·외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K-MOOC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MOOC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2.24.]

제5장 보칙 <개정 2023.2.24.>

제18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수업관리 규정」,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4.>

②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2.8.31.]

제19조(지식재산권)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개발자와 본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강의영상을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

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3.2.24.>

② 개발한 강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학교는 사용권을 갖는다. <신설 2023.2.24.>

③ 콘텐츠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자가 갖는다. <신설 2023.2.24.>

④ 원격수업 및 MOOC를 개발하는 교원은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20조(적용예외) ① 센터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수업개설 및 수업구성 등을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 2022.8.31.>

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 tClass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

③ 제9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점교류 원격수업,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 원격수업, tClass, iClass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④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교육과정 학생은 매 학기 9학점 및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⑤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tClass는 매 학기 3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개정 2023.2.24.>

⑥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AHA 기초소양 콘텐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 공유 및 융합 관련 수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

[본조신설 2020.5.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원격강좌 개설 및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3.4.> <개정 2021.8.20.>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

소 속	대학 학과		성 명	
과 목 명			학수번호	
이수구분	☐ 교양 ☐ 전공 ☐ 교직		학점(시간)	
개발구분	☐ 신규개설 ☐ 기개설		강좌언어	☐ 한국어 ☐ 외국어
수업구분	원격중심수업	☐ 교내 원격수업		☐ 학점교류 원격수업
	원격활용수업	☐ iClass	☐ 블렌디드러닝 ☐ iClass ⁺ 원격 () 시간 + 대면 () 시간	
영상제작	☐ 자가촬영 ☐ 스튜디오 촬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이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개설할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술			
수업설계	주차별 강의영상 및 학습활동 시간 구성, 사전학습 영상 개발 및 대면수업 연계 방안(iClass),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 연계 및 운영계획(블렌디드러닝 및 iClass+) 등의 수업 운영계획 등 기술 ※ 강의영상 개발 총 주차, 주차별 학습시간 구성 등은 ‘원격수업 안내’ 참조			
위와 같이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과장: (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귀하				